

의안 번호	2477	【울산광역시 증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5. 10. 2.(목)
- 제출자 : 강혜순 의원 외 9명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2. 제안이유

-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각종 중독 피해를 방지하고자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예방교육 및 홍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비밀준수의 의무 (안 제10조)

4.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조

5. 검토의견

-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게임, 도박, 마약, 주류, 담배 등의 유해약물 및 환경으로부터 중독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 청소년들의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유해약물 특히 마약의 경우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유해환경 및 유해약물의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및 중독 예방사업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 됨.
- 다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건소 소관사무로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에서 중독예방사업(알콜, 도박, 스마트폰, 약물중독)과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 담당부서와 보건소 간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음.
-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필요한 시책 추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근 거 법 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